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7. 19. 구자근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 7. 22.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9. 26.)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4. 11. 2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수정

가결)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11. 28.) 상정 · 소위심사

보고 · 찬반토론 ·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구자근의원)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화, 판로개척·해외진출, 창업교육, 데이터의 공유·활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때 청년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및 장애인창업기업 등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창업 환경에 있어서 수도권과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심각하여 수도권에 창업기업 및 벤처기업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 수도권 외의 창업기업에 대하여도 우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비수도권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인규)

개정안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현행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등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예비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기업,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 창업기업,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

개정안을 통해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포함시키게 되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예비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수도권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

소지역의 경우에는 그 외의 수도권 지역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점에 대한 고려의 여지가 있어 보임.

참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¹⁾는 수도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되,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소재 기업이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 지역을 그 밖의 수도권과 다르게 취급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우대 지원하자는 취지에 동의하며, 창업활성화 사업 중 일부는 지금도 수도권 외 소재 창업기업을 우대 지원하고 있어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② 수도권(제75조의5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당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폐쇄하고 수도권 외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이 경우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 및 공장의 범위, 업종, 규모 및 공장용 부동산의 요건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고,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성민 위원)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의 창업기업을 우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원안의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은 비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창업여건이 열악하여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시 우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 지역의 창업기업을 우대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2항제4호 중 “수도권 외의 지역”을 “수도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생략) ② 중소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 른 사업을 추진하 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 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수도권정비계 획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 업을 하려는 예비 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4. 「수도권정비계 획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수도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에 관한 특별 법」 제2조제12 호에 따른 인구 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접 경지역을 제외한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u>다) 외의 지역에</u> <u>서 창업을 하려는</u> <u>예비창업자 또는</u> <u>해당 지역에 소재</u> <u>하는 창업기업</u>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생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제10조(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려는 예비창업자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창업기업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